#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- 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- 2. 심사경과
  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년 2월 24일, 경상북도지사
  - 나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8일
  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  -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(2023년 3월 1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- 3. 제안설명의 요지
  - 가. 제안설명자: 건설도시국장 박동엽
  - 나. 제안이유
    - 예천군 원도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유 공유재산인 폐철도부지에 녹지 및 여가공간,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제13조)
-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제9조 제1항)

## 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황보 석)

#### 가. 동의안제출 목적

○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공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경상북도 낙후 지역발전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5억원(도비 12.5 군비 12.5)을 투자하여 예천읍 남본리 일원 부지 21,960㎡(도유지 18,884㎡, 기타 3,076㎡)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낙후지역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임
- O 도유지내 축조 할 영구시설물 및 규모
  - 위치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-1번지 일원
  - 규모 : 18,884㎡(광장, 도로, 정원, 쉼터, 놀이터, 주차장 등)
  - 지목 : 철도용지(잡종지)
- 현재 경북 도내에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으로 17개 시·군, 68개사업, 2천2백억원 규모로 추진중에 있고, 22개사업은 준공

되었으며, 나머지 사업은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음

O 도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 할
뿐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민
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시설 축조의 필요성이 있음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」을 추진함에 있어 2020년 1월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,
- 금번 사업의 주요 시설물(공원시설 등)을 공유재산 내에 축조하기 위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 11호¹)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, 2023년 2월에 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용도변경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, 경상북도지사와 예천군수와 「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합의서」를 체결하였음.
-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광장, 도로, 정원, 쉼터, 놀이터, 주차장, 족욕장, 관리사무실 등 공원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예천군 구도심과 낙후지역 주변을 활성화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, 치유공간, 위로공간 등 공존과 화합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

<sup>1)</sup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11호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으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 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함

줄 것으로 사료됨.

- 특히, 구도심내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 설치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, 나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,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문화공원 조성후 공원 및 공원내 영구축조시설물과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목표 대비 사업의 시행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1 예천 예누리문화공원 조성사업

❖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경북선 예천~어등 간 페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낙후지역발전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

## 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0 ~ 2024

○ 위 치 :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-1번지 일원

○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250 군비 1,250)

○ 사 업 량 : 21,960㎡(도유지 18,884, 기타 3,076)

○ 사업내용 : 도로및광장, 조경시설, 휴양시설, 관리시설, 녹지 등

#### -[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]-

- ◇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의거 성장촉진지역\*에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
- \* 성장촉진지역(지역의 낙후도, 인구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).
- ◇ 도내 총 17개시군\* 2,177억원 68개사업추진('22년까지 22개소 준공)
- \* 안동, 상주, 문경, 영천, 영주, 군위, 의성, 청송, 영양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봉화, 울진, 울릉

## □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

○ 20. 2.: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확정

○ 20. 12. : 실시설계 용역 시행

○ 22. 10. :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23. 2.~3. : 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합의서작성(도↔예천군)

**Q** 23. 6. :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

O 24. 12. : 준공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